

부산광역시사하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6. 10. 4 ——— 사하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1996. 10. 4

다. 상 정 일 자 : 제53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96. 10. 17)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박춘재 보건소 서무과장)

가. 제안이유

- 국민건강증진법(1995. 1. 5 법률 제4914호) 제34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고,
-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함.
-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 증진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위반자, 19세 미만인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자,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를 위한 절차, 방법등을 규정하는 사항으로서 관련 법규와 합치되므로 조례안과 같이 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구민의 준법의식을 제고하여 위반행위를 사전예방 등으로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됨.

4. 질의 답변 요지

- 조례안 별표 개별기준에 19세 미만자라도 성숙도에 따라 성인으로 착각할 수도 있으며, 자녀에게 담배 심부름을 시켜도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 ▷ 착오하여 판매하거나 자녀에게 심부름시켜도 적발되며 과태료가 부과됨
 - 고의나 동기여부는 판명할 수 없는 행정질서벌의 성격이 강한 조례 입법 취지임.
- 금연 구역안에 흡연을 할 경우 과태료 부과?
 - ▷ 금연 구역설정에 관한 의무사항 위반시에 과태료를 처분하고 금연구역 흡연은 경범죄 조항에 의거 벌칙금이 부과됨
- 국민건강 증진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관리하여야 할 우리구 대상 현황은?
 - ▷ 담배 자동 판매기 51개소, 금연 흡연구역 지정구분 대상 299개소, 담배 소매상인 994개소, 보건교육 대상업소 9개소등 총 1,352개소가 실태조사 되어 있음.
- 국민 건강증진법 규정에 5가지 내용인데 왜 조례상 4가지 위반사항만 규정하게된 이유는?
 - ▷ 담배제조, 수입판매업자에 한하여 제조담배에 관한 광고를 금지할 수 있다는 규정은 국가재정과 관련된 보건복지부 업무소관으로 조례규정 사항이 아니라 제외하였음.
- 보건교육실시 위반 사항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 ▷ 시행령 부칙의 대상시설 기준에 보면 500인이상 상시 근로자와 300인이상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등은 1년에 2시간 이상, 그리고 종합의료 병원등에는 1개월 1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
- 영업의 양도 양수로 인한 과태료 처분 승계 문제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구체화할 수 있는 입법례가 있어야 될 것인데 견해는?
 - ▷ 현실적으로 여러가지 유형을 달리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나 단서조항 명기에는 여러 가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임.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의결